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2409
------------	------

2025년 3월 5일
교 육 위 원 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2월 3일, 문성호 의원
2. 회부일자 : 2025년 2월 6일
3. 상정일자 :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
(2025년 3월 5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문성호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청소년 대상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실효성 높은 교육이 필요함이 대두되는 실정임.
- 특히, IT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적 희롱 및 폭력에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될 수 있기에 단순 주입식이 아닌 강의, 토론, 실습 및 역

할연기 등을 통해 직접 깨우치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.

2. 주요내용

-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통해 피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교육 방식을 할 수 있도록 명시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문성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409호로 발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고 현실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방식을 다양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강의, 토론, 실습 및 역할 연기 등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학교장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 15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등)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,

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, 강의,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,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¹⁾

○ 서울시교육청 또한 ‘학생 생활교육 운영계획’을 수립하고 운영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면서, UCC 경진대회, 학생회 및 학급회의, 역할극 등과 같은 다양하고 체험적인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²⁾

○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방법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방식을 조례로서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한다는 점에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정책에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○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 중 하나로,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율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, 실습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의견을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하여 발의된 것으로서,³⁾

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다 할 것입니다.

1)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학교폭력 예방교육)

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
4. 강의,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,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.

2) 서울시교육청 학생 생활교육 운영 계획

3) 서울특별시의회 보도자료(2025.2.5.)

문성호 서울시의원, “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아홉 조례 모두 검토 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발의!”

- 지난 2024년,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9개 조례안을 모두 직접 검토하고 법률 자문받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발의했음을 보고

- 기존 현행에 녹여낼 수 있는 조례와 강제력을 근거로 하는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보완 및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에 따라 추진함을 알림
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769, 2025.2.13.)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Ⅴ. 토론요지 : 없음.

Ⅵ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Ⅶ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이루어질 수 있도록”을 “이루어지고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, 토론, 실습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)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	제10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) ① -- ----- ----- 이루어 지고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, 토론, 실습 및 역할 연기 등 다양한 ----.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